

2026학년도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

1. (목적)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내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

2. (처리대상 폐기물 종류)

폐합성수지, 폐합성수지혼합, 그 밖의 폐목재, 폐도자기조각

3. (계약기간) 2026. 3. 1.~2028. 2. 29.(24개월)

4. (위탁 처리예정량)

폐기물 종류	단위	평균수량	비고
폐합성수지(51-03-01)	m ³	4,249	2년간
폐합성수지혼합(51-03-01)		1,142	
그 밖의 폐목재(51-20-99)			
폐도자기조각(51-07-02)	ton	31	

※ 발생수량은 참고용으로 실제 배출량은 상명대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.

※ 폐합성수지 보관 박스는 24m³ 암롤박스 / 2곳 설치 (납품 및 설치비용은 업체부담)

※ 폐도자기조각 보관 박스는 20m³ 암롤박스 / 1곳 설치 (납품 및 설치비용은 업체부담)

※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함

5. (참가자격) ① 또는 ②를 소지한 업체

- ① 폐기물종합재활용업(지정폐기물외 폐기물)[업종코드: 6786]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
- ② 폐기물수집·운반업(사업장생활계폐기물)[업종코드: 1227]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

6. (용역수행 일반 지침)

- 가. 용역 수탁업체(이하 “수탁업체”라 함)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수거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
- 나. “수탁업체”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수집·운반·처리하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
- 다. “수탁업체”는 폐합성수지 수거를 위한 24m³ 암롤박스를 2개 이상, 폐도자기조각 수거를 위한 20m³ 암롤박스 1개를 설치하며 우리 대학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해야 함
- 라. “수탁업체”의 수집·운반 차량은 허가 받은 집게차량 및 암롤차량으로 운반해야 함
- 마. 폐도자기조각의 경우 암롤차량으로 운반해야 함
- 바. 배출자, 운반자, 처리자와 3자 계약을 체결해야 함
- 사. “수탁업체”는 폐기물의 운반, 처분 등에 대한 인수인계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
- 아. 폐기물처리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처리량을 합산하여 정산함
- 자.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음

- 1)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
- 2) 천재지변 외의 사유로 수거 시간 및 조건 등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폐기물 수집·운반을 진행하는 경우
- 3) 기타 일반계약조건 해지사유 발생 시

7. (용역수행 세부지침)

- 가.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물의 배출은 요청을 받은 시간 부터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함
- 나. “수탁업체”는 폐기물 수거를 평일 09:00~15:00 내에 실시해야 함
- 다. “수탁업체”는 폐기물 수거 전 상명대학교 담당자에게 수거 차량의 상태를 확인 받은 후 수거를 진행, 수거 완료 시에는 상명대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폐기물을 이동해야 함. 만일 확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방출 시(3회) 계약 파기 조건으로 간주됨
- 라. 폐합성수지(51-03-01)의 경우 소량의 기타폐기물(음식물류폐기물 외)이 포함되어 배출될 수 있고 “수탁업체”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합성수지를 처리해야 함. 수반되는 비용(선별 비용 등)은 “수탁업체”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문제 발생 시 “수탁업체”는 우리 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마. 폐도자기조각(51-07-02)의 경우 소량의 기타폐기물(인터로킹 조각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)이 혼합될 수 있고 “수탁업체”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도자기조각을 처리해야 함. 수반되는 비용(선별 비용 등)은 “수탁업체”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문제 발생 시 “수탁업체”는 우리 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바. 폐합성수지의 경우 암롤박스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 전량을 수거했을 시에만 24m³/박스를 인정하며, 그렇지 못할 시에는 상명대학교 담당자에게 수량을 산정 받고 폐기물을 이동하여야 함. 만일 수량을 산정 받지 않고 무단 방출 시(3회) 계약 파기 조건으로

간주됨

사. “수탁업체”는 과업지시서를 모두 인지 후 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

아.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함

8. (손해배상)

가. “수탁업체”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나. 폐기물의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상명대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상명대학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다.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“수탁업체”에게 있음

9. (주의사항)

가. “수탁업체”는 종업원이 폐기물 수집·운반 등 교내 작업과 관련하여 기물의 손괴 및 인사사고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함

나. 상명대학교 내에서 차량 이동 시 “수탁업체”의 차량은 교내 규정 속도(20km/h)를 준수하며 기타 차량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함

다. “수탁업체”는 계약 내용의 수행 시 상명대학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

10. (기타)

가. “수탁업체”는 상명대학교의 회계규정,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

계약관계 법령을 준용함

- 나.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이라도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. 다만,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함